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폐기물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낮은 이행보증 범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량 확대,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 기간 산정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이상 연 단위”를 “단위”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체결하여야”를 “체결해야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 중 “1.5배”를 “2배”로, “3배”를 “5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.5배”를 “2배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1.5배”를 각각 “2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정하여야”를 “정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처리이행보증보험 금액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을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방치 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)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가입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8조(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 증보험)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보험(이하 “처리이행보 증보험”이라 한다)의 가입기간 은 1년 <u>이상 연 단위</u> 로 하되, 보 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<u>하여야</u> 한다.		제18조(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 증보험) ①----- ----- ----- ---- <u>단위</u> ----- ----- ----- <u>해야</u> -----.		
② (생 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 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환경 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보험 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 약을 <u>체결하여야</u> 한다.		③----- ----- ----- ---- <u>체결해야</u> -----.		
제21조(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) ①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 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		제21조(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) ①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폐기물처리업자 :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 제9항에 따른 양(이하 “허용 보관량”이라 한다)을 곱한 금 액의 <u>1.5배</u> (허용보관량을 초과 한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		1. ----- ----- ----- -- <u>2배</u> ----- -----		

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)

2. 폐기물처리 신고자 :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(이하 “보관량”이라 한다)을 곱한 금액의 1.5배

② (생략)

제23조(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) ①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: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.5배 이내

2.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: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1.5배 이내

②환경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

----- 5배 ---
--

2. -----

----- 2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) ①-----

-----.

1. -----

2배 ----

2. -----

2배 ----

②-----

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 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<u>정하여야</u>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 <u>정해야</u>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폐자원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64